**(이하”고객사”라 함)와 주식회사 케이지모빌리언스(이하”회사”라 함)은 “고객사”와 “회사”의 전자결제서비스를 이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이하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목 적)**

본 계약은 ”고객사”가 자신의 상품 또는 서비스(이하”상품”이라 함)을 이용자에게 판매함에 있어서 “회사”가 제공하는 전자결제서비스를 이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1) 신용카드 결제 서비스 : “고객사”가 인터넷 상에 설치한 매장에서 이용자가 “회사”의 전자결제서비스를 이용하여 “고객사”의 “상품”을 구매할 때에 “회사”가 제휴한 카드사를 통해 무전표 매출승인 및 입금, 대금결제 기타 관련 서비스를 다음 각 호의 수단을 통해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1.인터넷 전자결제 통신프로그램 (결제서비스용 프로그램 모듈)의 제공

2.위 제1항 제1호의 프로그램의 설치 안내문 제공

2) 은행이체 서비스 : “고객사”가 인터넷상에 설치한 매장에서 이용자가

“회사”의 전자결제서비스를 이용하여 “고객사”의 “상품”을 구매할 때 “회사”의 전자결제서비스를 통해 은행 계좌를 이용한 대금결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이때, 은행이체라 함은 실시간 계좌이체를 의미한다.)

3) 가상계좌 서비스

3-1) 가상계좌 결제정보 : “고객사”가 인터넷 상에 설치한 매장에서 이용자가 “고객사”의 “상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회사”의 전자결제결제서비스를 통하여 제시한 이용자의 고유값, 구매자명, 거래계좌발급은행, 연락처, 이메일, 주소, 입금자명 등 가상계좌 거래승인을 받기 위한 제반 정보를 말한다.

3-2) 가상계좌 서비스 : “회사”가 은행 내에 “회사”의 대표 모계좌를 두고

가상의 자계좌를 “고객사”의 이용자에게 부여하여 온라인상에서 “고객사”의 판매대금 수납 및 결제업무 등 금융업무를 “회사”의 명의로 “고객사”를 대신하여 처리하여 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4) 휴대폰 결제 서비스 : “고객사”가 인터넷 상에 설치한 매장에서 이용자가 “회사”의 전자결제서비스를 이용하여 “고객사”의 “상품”구매 시, 이용자의 휴대폰번호와 생년월일을 입력하고 난수로 생성되어 이용자가 소지한 휴대폰으로 문자메세지 형태로 발송된 승인번호를 결제창에입력함으로써 결제를 완성시키는 휴대폰을 이용한 결제서비스를 말한다.

5) 상품권 서비스 : 기명 또는 무기명으로 발행되는 선불카드 및 상품권 중

“회사”의 전자결제서비스를 통해 제공되는 지불수단을 말한다.

6) 이용자 : “고객사”의 “상품”을 구매하는 자를 말한다.

7)  대표가맹점, 대표가맹점 상점 : “고객사”가 신용카드 가맹점이 아닌 경우

“회사”가 “고객사”를 위하여 신용카드 처리업무를 대행하기 위해 “회사”의

명의로 개설한 신용카드 가맹점을 대표가맹점이라 한다.

대표가맹점을 이용하여 이용자에게 상품을 제공하는 “고객사”의 매장을

대표가맹점 상점이라고 한다.

8) 3자 가맹점 : "고객사"가 각 신용카드사와 직접 가맹계약을 맺고 가맹점의 주체가 되며, 신용카드 결제에 대한 모든 대금정산은 "고객사"와 가맹 계약된 각 카드사로부터 지불을 받는다. (단, "회사"는 승인대행의 역할을 함.)

9)  상품 : “고객사”가 “회사”의 전자결제서비스를 이용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유무형의 재화와 용역을 말하며, 상용프로그램, 데이터는 물론 이용자가 인터넷 상에서 대금을 지불하고 구매할 수 있는 모든 대상을 포함한다.

10) 전자결제서버 : “고객사”가 “회사”의 전자결제서비스를 이용하여 이용자에게 판매한 상품의 대금결제를 위하여 ”회사”가 운영하는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11) 본인인증서비스 : 신용카드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로 카드번호, 유효기간 외에 생년월일 및 비밀번호의 일부를 입력 받아 카드의 유효성을 확인해 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단, 상기 본인인증 서비스는 카드의 유효성을 확인해 주는 서비스로 실제 본인 사용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아니다.)

12) 무이자할부서비스 : 할부판매 시 ”고객사”가 이용자 대신 할부 수수료를

부담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13) 에스크로(Escrow)서비스 : 2006.4.1일부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온라인전자상거래 시 공신력 있는 제3자 (에스크로사업자-“회사”)가 소비자의 결제대금을 예치하고 있다가 상품배송이 완료된 후 그 대금을 “고객사”에게 지급하도록 하여 거래상의 안전을 담보하는 제도를 말한다.

14) 내죠여왕 서비스 : “고객사”의 이용자가 “고객사”의 “상품”을 구매할 때 별도 앱 설치나 회원가입 절차 없이 이용자의 휴대폰번호를 통해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고, 이용자는 문자 메시지의 URL을 통해 “회사”의 전자결제서비스에 접속하여 결제를 진행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15) URL결제 서비스 : “고객사”의 이용자가 “고객사”의 “상품”을 구매할 때 별도 앱 설치나 회원가입 절차 없이 “고객사”가 직접 이용자에게 URL링크를 발송하고, 이용자가 URL링크를 통해 “회사”의 전자결제서비스에 접속하여 결제를 진행하는 비대면 법인 결제서비스를 말한다.

16) 간편결제 서비스 : 이용자가 간편결제 사업자에게 카드정보, 계좌정보 등

결제에 필요한 정보를 사전 등록하여, “고객사”의 “상품”을 이용함에 있어 별도의 정보입력 없이 결제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17) 결제기관 : “회사”의 전자결제서비스를 위하여 결제인가, 수납대행, 결제대금 입금을 제공하는 신용카드사업자, 이동통신사, 은행 등의 원천 기관을 말한다.

18) 서비스 제한 또는 불가업종 : “결제기관” 또는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결제서비스의 이용이 제한되거나 불가능한 업종을 의미하며, “본 계약” 체결 이후에도 “결제기관” 또는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업종 및 제한사항은 추가, 삭제 및 변동될 수 있다.

**제 3 조 (계약기간)**

1)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간 유효하다.

2) 전항의 유효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어느 일방 또는 쌍방에 의한 서면 및

유선(이메일)의 통보가 없을 경우 본 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1년간 자동

연장되며 그 이후도 같다.

3) 본 계약의 유효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다만, 본 계약 제5조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4 조 (서비스 이용수수료)**

“회사”가 “고객사”에게 제공하는 전자결제서비스에 대한 수수료 및 이용 서비스 내역은 **[MOBILPAY 전자결제서비스 신청서](참조)** 와 같다.

**제 5 조 (계약의 해지 및 연장)**

다음의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양 당사자는 계약기간 중에도

불구하고, 서면, 유선 및 이메일 통보로서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고객사” 또는 “회사”가 본 계약 및 관련 부속약정 사항 또는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2) “고객사” 또는 “회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의 명예나 신용을 실추시킨 경우

3) “고객사” 또는 “회사”에게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처분, 상거래로 인해 발생한 채권의 체납, 대외신용도의 급격한 하락 파산, 회생, 회사정리 등의 절차가 개시 또는 신청되는 경우

4) “고객사”가 제공한 상품에 관하여 이용자의 이의제기(철회. 항변권 및 본인

미사용 주장 포함)나 신용 구매분에 대한 카드사의 대금연체가 대량 또는

빈번히 발생하여 더 이상 정상적인 거래가 부적합하다고 결제기관 또는

“회사”가 판단하는 경우

5)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본 계약과 관련된 “고객사”의 소유권 기타

권리의 전부나 일부를 제3자에게 임대, 판매, 양도하는 경우 “고객사”의

사이트에서 불법 또는 부정매출(현금성 대출처리 등)이 발생한 경우

6) 기타 건전한 상거래관행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는 행위로 인해 정상적인 계약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7) “회사”의 심사 기준상 비정상적인 인터넷 전자상거래라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최초 “회사”와 계약 당시의 물품 및 서비스 제공이 상이하거나 “회사”에 통보 없이 추가 판매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예: 다단계판매, 자점매출, 현금깡, 경매, 사업자등록증에 명기되지 않은 물품[서비스]판매, "회사"의 심사 기준상 불가한 상품 및 서비스 형태의 서비스 제공 등)

8) 특별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결제승인 요청이 없거나 사전 서면 통지없이 타 업체로 전자결제서비스를 변경 또는 중복하여 이용하는 경우

9) “회사”에게 폐업 및 해제요청을 통보하지 않은 경우

10) "고객사"가 "회사"에게 등록 요청한 사이트(홈페이지)외 제3의 사이트에서 매출이 발생한 경우

11) 제23조 (계약 변경 사항 통보 및 손해배상)에 명시한 변경내용의 통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고객사"가 쇼핑몰을 운영하여 "회사"가 이를 확인하고 "회사"의 전자결제심사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12) “고객사”와 “회사”가 서면 합의한 경우

**제 6 조 (“고객사”의 의무)**

1) “고객사”는 상품에 대한 제조, 판매 등과 관련된 제반 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관계당국의 허가, 인가 또는 신고 등 제반 절차가 필요한 경우 이를 반드시 필(必) 함으로써 적법하게 전자상거래행위를 하여야 한다.

2) “고객사”는 이용자와 “회사”에 대해 성실하고 신뢰성 있게 동 상점을 운영하여야 하며, “고객사”의 불성실한 상점 운영으로 인하여 “회사” 및 이용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고객사”는 “회사”의 전자결제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고객사”측에 필요한

장치 및 프로그램을 설치해 두어야 한다.

4) “고객사”는 “회사”의 전자결제서비스를 이용하는 대가로 **[MOBILPAY 전자결제서비스 신청서](참조)** 의 전자결제 서비스 이용수수료 및 등록비, 연 관리비를 “회사”에게 지불하기로 한다.

5) “고객사”는 상품의 주문 및 지불완료를 확인한 후에 “고객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이용자에게 배송(혹은 서비스제공) 하며, 이때 “고객사”는 이용자의 부정한 거래에 대비하여 향후 거래자의 확인 또는 추적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정하는 증빙자료를 확보하여야 한다.

6) “고객사”가 “회사”의 대표가맹점 상점으로서 상품을 판매한 경우, ‘**㈜케이지**

**모빌리언스**'의 명의로 대금이 청구됨을 이용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동 상점의 주요화면에 명시하여야 하며, 이때 “회사”의 로고(이미지)를 삽입한다.

7) "고객사"는 신용카드가 사용될 때(승인) 본인에 의해서 사용되는지 필히

확인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추후 타인의 사용으로 인한 민원 및 "회사"에게 피해 발생 시 해결될 때까지 모든 책임은 "고객사"가 지도록 한다.

8) 거래의 취소, 환불 또는 부정한 거래로 인한 사고 시 이용자의 확인, 추적

또는 채권회수를 위하여 “회사”가 필요로 하는 경우, “고객사”는 이용자에

관한 정보를 지체 없이 “회사”에게 전송한다. (이용자의 성명, 전화번호, 주소, 전자메일주소 등 일체의 배송 및 서비스 제공정보)

8-1) 증빙자료에 대해 “고객사”는 매출일로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회사"의 제출 요구가 있을 시에는 제 3 영업일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증빙자료 미제출 및 비정상 거래는 “고객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처리한다.

8-2) "고객사"는 "회사"의 전자결제시스템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모든 거래내역(이용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구매내용 등)에 대하여 반드시 이용자의 동의를 획득한 후 "회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회사"는

"고객사"로부터 제공받은 거래내역의 진위성 몇 본인사용여부를 이용자에게 확인할 수 있다.

9) 사고발생(쇼핑몰의 물품 미배송/부도, 미수금발생 등)에 따라 "고객사"에서

"회사"와의 계약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기 위한 최소한의 담보로써 “고객사”는 “회사”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한다.

10) “고객사”는 계약해지 후 “회사”의 전자결제시스템 이용기간 중 발생한 거래에 대해 이용자가 민원(결제기관 접수 민원 포함)을 제기할 경우,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해결하여야 하며, 그에 대한 결과를 “회사”와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7 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본 계약기간 중 이용자가 구입한 “고객사”의 상품과 관련하여

“고객사”가 그 판매대금을 원활히 지급 받을 수 있도록 신뢰성 있는

전자결제서비스를 제공한다.

2) “회사”는 “고객사”의 상품을 구매한 이용자가 전자결제서비스를 이용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지불할 수 있도록 “고객사”가 운영하는 전자상거래 시스템과 “회사”의 전자결제서버가 연동하도록 지원한다.

3) “회사”는 “고객사”와 “본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각 신용카드사들과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단, "고객사"의 판매물품 및 단가의 특성이 각 개별 카드사의 등록정책에

맞지 않을 경우, 해당 카드사를 이용하지 못할 수 있다.)

4) 전자결제서비스와 관련하여 “고객사”측에 설치된 전자시스템에 대해 기능의 추가 또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사”는 “고객사”에게 유선, 서면 및 이메일 공지 등으로 기능을 추가하거나 개선한다.

5) “회사”는 전자결제서비스를 연중무휴 24시간 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동 서비스 관련 시스템의 정기점검 또는 기술상의 필요 등에 인하여

일시적인 서비스 중단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고객사”에게 사전통보하기로

한다. 단, 불가항력 또는 천재지변에 의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8 조 (거래승인 및 본인인증)**

1) 거래승인의 의미는 그 거래에 사용되는 카드의 유효성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며, 거래 자체의 진위성 및 본인에 의해 정당하게 사용되는지 여부에

대한 관리는 “고객사”의 책임으로 한다.

2) “회사”,”VAN사”,”신용카드사”의 3자간 제휴에 의하여 제공하는 신용카드

본인인증 서비스를 “고객사”가 선택 하여 이용할 경우 “고객사”는 동 서비스 이용수수료 **[MOBILPAY 전자결제서비스 신청서](참조)**를 부담 하여야 한다.

3) “회사”는 “고객사”가 보내는 메시지 전문에 의거하여 인증여부를 결정하고

처리하도록 하며, 인증에 대한 책임소재는 전적으로 “고객사”가 보내는

메시지 전문을 기준으로 한다.

4) 해외카드의 경우 부도율이 높은 관계로 “회사”의 시스템에서는 승인거절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고객사”가 해외카드 서비스 신청서를 통해 요청 할

경우 “회사”는 이를 수용하여 승인처리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모든 책임은 “고객사”의 책임으로 한다.

5) 국내발행 카드 중 일부 미 인증카드의 경우 인증서비스 불가로 승인이 되지 않으나 “고객사”가 요청할 경우 “회사”는 본인인증 절차 없이 승인처리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모든 책임은 “고객사”의 책임으로 한다.

6) 4, 5항에 명시된 해외카드 또는 국내 미 인증카드에 대한 승인은 “고객사”가 **“**회사”의 별도의 심사 및 신청함을 기본으로 한다.

7) "회사"는 "고객사"의 전자결제서비스 신청서를 접수받고 "회사"의 심사기준 및 “고객사”의 신용도, 매출유형(판매형태, 판매물품 등), 이용자의 이의신청 및 민원발생 빈도, 민원해결을 위한 협조성 등 "회사"의 리스크관리운영 방침에 따라 “고객사”에 대하여 신용카드(선불카드, 직불카드) 1회 승인 한도 및 월 **승인한도액을** 제한하여 지정할 수 있다.

(단, "회사"와의 계약성립 이후 "고객사"의 매출에 대한 민원발생빈도, 매출

유형 (판매형태, 판매물품 등) 등을 기준으로 변동할 수 있다.).

8) "고객사"의 쇼핑몰에서 발생한 신용카드 매출이 신용카드사로부터 비정상거래 및 신용구매분에 대한 카드사의 대금연체 등의 사유로 확인되어 승인이 제한된 경우, 신용카드사의 승인제한 조치에 따른 모든 손실 발생 부분은 "고객사"가 책임을 진다.

**제 9 조 (거래의 매입요청)**

1) **매입요청** : “고객사”는 반드시 이용자가 구입한 상품 및 용역이 이상 없이

제공되었는지 여부를 물품배달 확인서 등을 통하여 확인 또는 물품배송이

완료된 후 이용자의 구입상품 및 용역대금을 “회사”가 지정한 절차와 형식에 따라 “회사”에게 통보하며, “회사”는 이를 근거로 해당 카드사에 매입을 요청한다.

2) 요청기간 : 전항의 매입요청은 자동매입을 기본으로 하되**, "고객사"의 매입**

**요청 기준이 자동매입이 아닌 수동매입의 경우에는 7일을 기본단위로 한다.**

(단, "고객사"의 요청이 있을 시는 월 1회 혹은 월 2회 단위로 운영할 수

있으나 승인 후 1개월이내에 매입요청을 하도록 하며 **매입기간 경과로** **인한 불이익은 전적으로 "고객사"에게 책임이 있다**.)

3) 매입요청시기 : 매입요청의 접수마감은 정산주기별 매입마지막일 24시 까지며, 접수마감일 이후 매입요청건은 차기 정산일에 포함되어 정산된다. “회사”의 사정으로 매입 요청시기가 변경될 경우 “고객사”와의 사전협의를 거쳐 통보한다.

3-1) 자동매입의 경우는 승인시점에 자동으로 매입요청되며, “회사”의 사정으로 매입 요청시기가 변경될 경우 “고객사”에게 통보한다.

4) 취소기간의 확보 : “고객사”의 매출내역에 대하여 매출 취소율이 과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사”는 “고객사”의 매입요청시기를 조정하여 취소기간을 확보할 수 있다.

**제 10 조 (은행계좌를 이용한 은행이체 서비스)**

1) 실시간 계좌이체 서비스

1-1) 실시간 계좌이체 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립된 거래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허용한 일자까지 취소가 가능하다.

1-2) 실시간 계좌이체 환불시 거래건의 승인수수료는 “고객사”의 부담으로 하고 “회사”는 “고객사”에게 반환하지 않는다.

단 승인일 당일에 취소한 경우에는 승인수수료가 반환된다.

2) 가상계좌 서비스

2-1) 가상계좌 관리

① “회사”는 “고객사”가 사용할 가상계좌를 배정하고 “고객사”는

“회사”로부터 배정받은 가상계좌번호를 “고객사”의 이용자에게 부여한다.

단, “고객사”의 이용자가 가상계좌번호를 부여 받은 후 정상적인 거래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해당 가상계좌를 회수한다.

② “고객사”는 “회사”로부터 부여 받은 가상계좌번호를 “고객사”의 책임

하에 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입금과 관련된 이의제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고객사”의 책임으로 한다.

③ “고객사”는 가상계좌를 부여 받은 “고객사”의 이용자에게 해당 계좌가 “고객사”의 이용자가 은행을 통하여 “회사”에게 결제대금 거래만을 위하여 사용되는 가상계좌임을 주지시켜야 한다.

④ “고객사”는 “회사”로부터 부여 받은 가상계좌를 “회사”가 허용한 업무 이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2-2) 거래확인

① “고객사”는 이용자의 가상계좌에 의한 상품 또는 서비스 구매 시

이용자의 거래내용을 “회사”와 접속된 전자결제시스템을 통해서 출력된

자료 또는 화면조회에 의하여 확인하며, “회사”는 별도의 거래명세서를

작성, 교부하지 아니한다.

② “고객사”의 가상계좌에 대한 입금내역은 명백한 오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객사”와 “회사”간에 상호 연결된 전자결제시스템을 통하여 “회사”가 “고객사”에게 전송한 화면조회로서 확정된다.

2-3) 가상계좌의 제공시간 및 취소(환불)

① 가상계좌서비스의 제공시간은 연중 무휴 365일 제공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하며, 해당 금융기관의 업무환경에 따라 제공시간을 달리할 수 있다.

② 가상계좌를 통하여 거래된 금액의 거래취소는 불가하며, 이때 “고객사” 의 이용자가 환불 및 취소를 요구할 경우 환불은 “고객사”의 이용자로부터 동 내용을 접수하여 “고객사”가 직접 처리하여야 한다.

**제 11 조 (휴대폰 결제 서비스)**

1) “고객사”가 “휴대폰소액결제”이용 중 월별 1회차 수납률이 55% 미만일 경우, “회사”는 정산대금 지급을 중지하고 정산방식을 변경할 수 있다.

2) 전항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고객사”는 해당월의 기 지급된 선급금을 반환하여야 하며, “회사”는 반환된 금액을 전항에 따라 변경된 정산방식으로 재정산하여야 한다.

3) 미성년자의 휴대폰 결제 서비스 이용 가능 연령은 이동통신사의 정책에 따라 운영된다.

4) 휴대폰 결제 서비스의 경우 미성년자가 부모 명의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고객사”의 상품 및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이에 대한 부모의 추후결제

정지요청이 있을 경우 “고객사”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5) 상기 1,2항과 같이 미성년자 결제 및 미성년자가 부모 명의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고객사”의 상품 및 서비스를 받아 발생된 모든 문제(민원 등)에

대해서는 “고객사”는 책임지고 이를 해결하여야 한다.

6) 본 조에서 말하는 미성년자라 함은 만19세 미만의 자를 의미하며, 이는

이동통신사의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7) 이동통신사에서 규정하는 휴대폰 결제 서비스 이용 불가 휴대폰은 “청소년

요금제 이용, 청소년 명의, 고객요청에 의한 결제 불가 선불폰,

법인폰(법인명의)”으로, 이동통신사의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8) 휴대폰으로 결제한 건에 대해서는 결제 해당월 중에만 취소가 가능하다. 단, 이동통신사의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9) “고객사”는 본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회사”에게 “고객사”와 “이용자”가 체결하는 재화 또는 용역 공급계약상 대금채권의 채권자를 “회사”로 정하는 약정을 “회사”가 “고객사”를 대리하여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에 대한 대리권을 부여 한다.

10) 이동통신사가 “이용자”에게 이미 대금 청구한 건에 대해서 “고객사”가 거래를 취소함으로써 발생하는 환불책임은 “고객사”에게 있다.

**제 12 조 (상품권 서비스)**

1) 상품권 서비스란 기명 또는 무기명으로 발행되는 선불카드 및 상품권 중

“회사”의 전자결제서비스를 통해 제공되는 지불수단을 말한다.

2) 이용자에 대한 정보제공으로 인한 민형사상의 책임 및 기타 일체의 법률적인 책임은 “고객사”에게 있다.

3) “고객사”는 건전한 정보의 제공을 위해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약속

보호에 관한 사항 등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서 정한 심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4) 천재지변, 비상사태,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발행사의 시스템 장애 등)로

상품권 서비스를 중단하여야 할 경우에는 사전 통보 없이 상품권 서비스를 일시 중단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5) 기타 상품권 서비스 이용관련 법규 및 준수사항은 각 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발행사의 이용약관에 따라 적용한다.

**제 13 조 (간편결제 서비스)**

1) 본 서비스의 종류로는 “회사”와 제휴된 간편결제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있다.

2) 간편결제 서비스의 수수료 및 정산주기는 **[MOBILPAY 전자결제서비스 신청서](참조)**와 같다.

3) 기타 간편결제 서비스 이용관련 법규 및 준수사항은 각 간편결제 사업자의

이용약관에 따라 적용한다.

**제 14 조 (이용수수료 정산)**

1) 정산대상 : 신용카드의 경우 “회사”의 대표가맹점을 통하여 거래승인을 받은 후, 매입요청 건을 정산대상으로 하며, 은행이체의 경우 “회사”의 서비스를 통하여 이체된 건을 정산대상으로 한다.

2) 정산시기 : 매입요청 후 **[MOBILPAY 전자결제서비스 신청서](참조)**의 정산주기에 맞게 정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지급일이 휴일 및 공휴일의 경우 익영업일에 지급한다.

3) 정산대금의 지급 : “회사”는 결제기관으로부터 정산대금을 수령한 이후 정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정산대금의 지급 시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무이자할부수수료, 인증수수료, 은행이체 수수료, 전자결제서비스 이용수수료, 연 관리비 및 기타 차감금액을 공제한 대금을 “고객사”에게 지급한다. 다만 결제기관의 사정으로 인하여 정산지급이 어려운 경우 그 사정이 존재하는 기간 동안 “회사”의 정산의무는 면제된다.

3-1) 휴대폰 결제 서비스의 정산대금은 **[MOBILPAY 전자결제서비스 신청서](참조)**에 따라 정산하되, 이동통신사에서 미 결제된 통신요금에 대해서는 “회사”는 “고객사”에게 정산하지 않는다. (이동통신사에 정상적으로 수납된 금액만 정산함) 다만, 양 당사자가 서면 합의하여 선급정산을 하기로 한 경우 이동통신사로부터 정산대금을 수령하기 전에 정산할 수 있다.

3-2) 상품권의 정산은 매월 1회로 하며,

승인이 발생한 날의 익월 25일에 수수료(부가세 별도)를 제외한 금액을 “회사”는 “고객사”에게 지급한다.

4) 세금계산서 발부 : “회사”는 “고객사”의 대금청구에 대하여 정해진 주기에

따라 정산하여 “회사”의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고객사”에게 지급하고,

“회사”가 공제한 수수료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고객사”에게 교부한다.

5) “고객사”는 “회사”에게 거래취소 분 및 기타 차감금액을 즉시 지급하여야 하며,“회사”는 위 거래취소 분 및 기타 차감금액을 “고객사”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단, “고객사”의 매출이 발생하지 않아 차감하지 못할 경우 “회사”는 “고객사”에게 과 지급액 및 차감 부족액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갖는다.

**제 15 조 (등록비 및 연 관리비 입금 / 환불기준)**

1) “고객사”는 “회사”와의 전자결제서비스 계약을 위하여 등록비(회사기재      )만원(VAT포함)을 “회사”에게 입금한다.

**(등록비 내역은 [MOBILPAY 전자결제서비스 신청서](참조).**

2) “회사”는 원활한 전자결제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각종 서비스 개발 및 유지

보수 관리비용으로 연 관리비를 “고객사”에게 청구한다. (초기 전자결제서비스 개시일로부터 1년간 선불(회사기재      )만원 [VAT포함]

3) 기 납부된 등록비 및 연 관리비를 단순변심 등 “고객사”의 귀책사유로는

환불이 불가능 하다.

4) 연회비 청구는 “고객사”의 결제대금에서 차감 정산하며, “고객사”의 매출이

3개월이상 발생치 않아 연회비 차감정산이 불가할 경우 자동으로 계약은

해지된다.

(단, 최초 가입시 카드결제나 기타 수단으로 선 입금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 16 조 (이용자의 구매취소 요청 및 민원의 처리)**

1) "고객사"는 "회사"의 전자결제서비스를 이용중에 발생된 거래에 대하여

이용자가 이의신청 및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 "고객사"의 책임하에 제반문제를 성실히 해결하여야 하며 "회사"는 문제해결 노력에 최대한 협조한다.

2) 이용자와 관련기관(금융기관 등)의 이의신청 및 민원발생 시 "고객사"와

"회사"는 상호 확보한 거래내역 관련 정보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호 제출 요구일로부터

제 3 영업일 이내에 상대방에게 서면 또는 유선으로 제공, 통지하여야 한다.

3) 관계법령이나 가맹점규약에 의한 정당한 매출취소 사유가 발생하여, 이용자가 환불 또는 반품을 요구할 경우 ”고객사”는 당해 이용자에게 구매시점 또는 서비스종료시점의 금액을 매출취소 해준다.

이때 수수료가 발생하는 경우 “고객사”에서 부담한다.

4) 정상적으로 배송 완료된 상품에 대해 이용자가 매출 취소를 요구하는 경우,

“고객사”는 이용자의 취소요구 사유가 정당한지를 판단한 후 거래승인의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5) 이용자의 교환 또는 환불요구에 대해 “고객사”는 접수시점으로부터

1영업일이내에 교환 또는 환불여부를 고객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6) 본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 접수되는 민원 건이라 하더라도 해당 민원건의

매출발생일이 계약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라면 전적으로 “고객사”가 책임지고 처리토록 한다.

7) "고객사"는 "회사"의 전자결제시스템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이용자와의 거래에 대해 반품처리 또는 비정상 거래의 사유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회사"의 정당한 취소 요구가 있을 시에는 해당 거래의 취소 의무와 취소건에 대한 대금의 환불 또는 상환의 책임이 있다.

8) 휴대폰 결제, 상품권서비스 관련 취소 내용은 제11조 8항에 의거한다.

**제 17 조 (비정상 및 부정거래 사고에 대한 처리)**

1) 부정한 또는 불법적 거래로 인한 매출(현금성 대출, 본인 미사용건[제3자도용,사고]등)에 대하여 “회사”는 “고객사”에게 대금정산 의무를 지지 않으며 만약 “고객사”에게 이미 지급된 경우에는 사후에 차감정산 또는 반환 청구권이 있다.

2) "회사"의 전자결제시스템을 이용하여 발생한 거래 가운데 "고객사"가 정상적인 거래임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 또는 이용자가 불법적인 거래를 목적으로 발생시킨 비정상거래에 대하여 "고객사"는 "회사" 또는 관련기관(금융기관등) 으로부터 서면, 이메일 또는 유선으로 확인 요청이 있을 경우 거래내역 관련 자료와 함께 제6조 8항에 명시한 제반 증빙자료(배송장, 주문내역, 수령증 등)를 요청일로부터 제 3 영업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3) "회사" 또는 관련기관(금융기관 등)에서 비정상 거래로 확인된 해당 거래의

취소 처리를 요청할 경우 "고객사"는 즉시 취소처리를 하여야 하며,

“고객사”의 처리가 7일동안 지연될 경우 "회사"는 해당 거래 내역을

임의로 취소할 수 있다.

4) "고객사"의 사이트에서 발생한 결제수단 별 거래 중 비정상거래로 인하여

관련기관(금융기관 등)에서 "회사"의 정산대금 가운데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보류 조치하거나 또는 그에 상응하는 제반조치를 취할 것이 예상된다고 "회사"가 판단한 경우, "회사"는 "고객사"의 정산대금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보류 조치할 수 있으며, 해당 금액이 부족할 경우 "고객사"는 "회사"가 지정, 요청한 방법에 따라 "회사"의 손실금액을 보전해주어야 한다.

5) 비정상 거래 등을 포함한 이용자와의 거래와 관련한 미회수 채권에 대한 회수 책임은 “고객사”에게 있고, 이로 인하여 “회사”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고객사”는 이를 배상해야 한다. 단, “고객사”는 자신의 고의 또는 중과실 없이 이용자의 접근매체가 분실, 도난, 위조 및 변조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고객사”에게 있다.

**제 18 조 (계약담보)**

1) “고객사”의 매출이 현금성 대출로 판명되거나 제16조 이용자의 이의제기가 빈번히 발생(민원발생)하는 경우 또는 제5조와 제16조의 (모든 조항 해당)

비정상적인 해당매출이 발생된 경우 해당매출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사”가 대금 지급보류를 통하여 “회사”의 “손실보증금”으로 처리 할 수 있으며 만일 해당매출이 “고객사”에게 이미 지급된 경우에는 사후에 해당금액만큼 차감정산 하는 반환 청구권이 있다.

2) “고객사”는 최초 계약의 담보로 “회사”가 피보험자로 되어있는 보증보험 증권증서 (회사기재     )만원을 보증보험사에서 발부 받아 “회사”에게 제출한다.

2-1)”회사”와의 계약해지 시에도 보증보험 증권은 유효하며, “고객사”는 보증보험 증권을 보상기간까지 해지할 수 없다.

2-2) “고객사”가 “회사”를 피보험자로 계약한 보증보험 증권은 1년 단위로 계약하되, 보증보험 계약 만기 2주전까지 계약 연장을 하여야 하며 연장하지 않을 시, “회사”는 “고객사”에게 제공하는 전자결제 서비스를 해지하거나, 지급보류 조치를 할 수 있다.

3) “회사”는 “고객사”의 판매신용도 및 신용판매실적, 민원접수 실적 등을

고려하여 전 1항의 “손실보증금”의 증액 또는 새로운 담보를 추가 요구할 수 있으며, “고객사”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4) “고객사”는 전 1항의 “손실보증금”에 대한 이자 등을 “회사”에게 따로 청구하지 아니한다.

5) 전 1항의 손해는 “고객사”가 영업점 폐쇄, 영업중단, 기타 사유로 이용자와의

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었거나 본 계약을 위반하여 “회사”에게 각종 피해를 입힌 경우에 발생한 것으로 본다.

6) “고객사”가 본 계약에 근거하여 현금 또는 정산대금에 대한 “회사”의 지급보류 등의 방식으로 “회사”에게 담보금을 납부한 경우 “고객사”는 이를 제3자에게 채권 양도하거나 질권설정 등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 19 조 (손해배상)**

1) 이용자의 이의제기(주문사실 불인정, 금액상이, 물품에 대한 불만족으로 인한 반환 요청, 배송사고, 파손 등) 또는 주문접수과정에서 “고객사”의 과실로 이용자와 “고객사”간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전적으로 “고객사”가 해결해야 하며 “회사” 또는 이용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고객사”는 “회사” 또는 이용자가 손해배상을 통지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전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2) “고객사”가 전 1항에 규정한 “고객사”의 손해배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동 매출을 취소하거나 다음 번 청구금액에 손해배상 금액에 대한 변제 및 충당 등 제반조치를 취할 수 있다.

3) “회사”는 “회사” 또는 이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고객사”가 배상하지 못하였을 경우 “손실보증금”과 상계하여 처리 할 수 있다.

4) 본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계약위반 또는 법규위반 등 귀책사유 있는 당사자는 상대방 또는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단, 천재지변, 전쟁 등의 불가 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양 당사자는 전항의 손해를 자신의 비용으로 해결한 경우, 귀책사유 있는 상대방에게 구상할 수 있다.

**제 20 조 (계약담보의 환원)**

본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고객사”와의 계약기간 동안 발생한 신용판매와 관련하여 “회사”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이용자의 이의제기, 신용카드사, 국세청 등 관공서에서 제재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6개월 경과 후 “손실보증금”을 “고객사”에게 환원할 수 있다. (단, 보증보험증권에 대하여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보증보험증권에 대한 모든 사항은 제18조 2항, 2-1호, 2-2호에 의거하여 적용한다.).

**제 21 조 (정보유출 금지)**

“고객사”와 ”회사”는 전자결제서비스를 제공, 이용하면서 획득하게 된 이용자의 정보, 쌍방의 대외비 기술자료, 영업비밀 또는 기타 업무상 기밀사항 등을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본 계약상의 업무 목적 외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그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해에 대해서는 그 위반 책임이 있는 자가 손해배상하고 모든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 22 조 (부 칙)**

1) “고객사”가 “회사”의 전자결제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본 계약상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관련 법령이나 규약 등이 적용되며 각종분쟁은 이를 근거로 처리한다.

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카드사의 가맹점 규약, 선불카드 또는 직불카드 관련약관 또는 규약, 은행법, 해당 금융기관의 예금거래 기본약관 등 금융거래 관련 법령 및 규정

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등 소비자 보호 관련법령 및 규정

2) 본 계약 내용에 관한 법률적인 해석에 이견이 있는 경우, “고객사”와 “회사”가 상호 성실히 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법률적인 분쟁이 야기되는 경우에는 “회사”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판결에 따른다.

**제 23 조 (계약 변경 사항 통보 및 손해배상)**

1) “고객사”는 “고객사”가 운영하는 사이트에 관하여 사이트 및 대표자의 신상 등에 변동사항 발생시 즉시 “회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만일 통보 지연으로 인하여 이용자의 민원 및 기타 문제가 발생할 경우 “고객사”는 이를 책임지고 해결하여야 하며, 이때 "회사"는 "고객사"의 전자결제서비스를 해지 할 수 있다. (여기서 통보방법은 서면, fax 또는 이메일을 이용한다.)

2) “고객사”가 “회사”에게 반드시 통보하여야 할 변동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대표자의 변경

나. 폐업 및 업종변경

다. 사이트 주소 및 대금결제계좌 변경

라. 판매물품 변경 및 추가사항

마. "고객사"의 이메일 주소 및 연락처의 변경

3) “회사”의 정책 및 결제기관의 정책상 발생하는 각종 변동사항(수수료, 정산주기, 보증보험, 가입금액 등)에 대해서는 “회사”는 “고객사”에게 변경 15일전까지 이메일 또는 서면(공문 또는 fax)으로 통보하여 변경할 수 있다.

**\* 단, 사업자번호 변경 시 신규 계약 필수 (제신고 불가)**

**대표자만 변경 시 제신고 가능하나 신규계약서 및 구비서류 접수 필수**

**제 24 조 (법령의 준수)**

1) “회사”는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이하 “특정금융정보법)상의 제반사항과 행정지침을 준수한다.

2) “회사”는 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고객사”의 신원정보 (법인명, 실명번호, 사업장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대표자 성별, 대표자 실명번호 등) 및 실제소유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문서, 자료, 정보 등을 통하여 정확성을 검증할 수 있으며, 관련내용을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할 수 있다.

3) “고객사”가 “특정금융정보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요구받은 정보의 제공을 거절할 경우 “회사”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제한 할 수 있다.

4)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고객사”에게 전자결제서비스 및 그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에는 “회사”는 정산대금 지급보류 조치를 취하거나 전자결제서비스 중지 혹은 계약해지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 25 조 (계약의 효력발생)**

본 계약은 “고객사”와 “회사”가 각각 서명, 날인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전자결제서비스 이용수수료 등의 부과는 계약의 효력발생일로부터 개시된다.

**제 26 조 (기타)**

1) 본 계약에 추가하여 적용할 약정(특약) 및 조항에 대하여는 별도의 특약서를 통하여 “고객사”와 “회사”가 상호 날인 후 약정하도록 한다.

2) 상호, 대표이사, 수수료 등 변경사유로 계약을 갱신할 경우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기존 계약상의 모든 권리와 의무는 신 계약에서 당연히 승계하는 것으로 한다.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상호 기명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  |  |
| --- | --- |
| **(“고객사” : 이용자)** | **(“회사” : 제공자)** |
| ※사업자등록증의 정보로 기재 | 주식회사 케이지모빌리언스 |
| 상 호 명 : |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
| 주 소 : | 케이지타워 16층 (순화동) |
| 대표(이사) :       (인) | 대표이사 유 승 용 (인) |
| **※ 개인/법인 사업자 : 대표자/법인 인감날인 필수** |  |

**1. 고객사 기본 정보**

|  |  |  |  |
| --- | --- | --- | --- |
| **상호(법인명)** (필수기재) |  | **영문상호**(법인사업자 필수기재) |  |
| **대표자 성명**(필수기재) |  | **대표자 영문성명**(필수기재) |  |
| **대표자 주민번호**(13자리 필수기재) | **-** | **대표자 국적**(필수기재) |  |
| **업종** |  | **업태** |  |
| **연락처** |  | **E-mail 주소** |  |

**2. 실제소유자 확인 기재사항**

※ 특정금융거래법 제5조의2(고객확인의무) 및 시행령 제10조의5(실제소유자 확인)에 따라 작성이 필요한 서식입니다.

|  |  |  |
| --- | --- | --- |
| **개인사업자** | **대표자와 실제소유자가 동일합니까?** | 예  아니오 (‘아니오’ 선택시 하단 실제 소유자 정보란 기재) |
| **법인사업자**  **· 임의단체** | **실제소유자 확인 생략대상** | 국가·지자체·공공단체  금융회사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법인 |
| **실제소유자 확인 대상** | 다음의 3단계 절차에 따라 실제소유자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1단계) 25%이상의 지분을 소유한 사람이 있는 경우 최대 지분 소유자 중 1인  2단계) 1단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최대 지분 소유자 중 1인  ② 대표자,업무집행사원 또는 임원 등의 과반수를 선임한 주주(자연인)  ③ ①,②외에 법인 또는 단체를 사실상 지배하는 자  3단계) 2단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
| **실제소유자**  **정보** | 성명(한글) :       성명(영문) :       국적 :  성별 : 남 여 생년월일 : | |
| ※ 실제소유자정보 기재시 유의사항  **체크** 또는 기재사항은 **작성** 부탁드립니다.  (한글성명 : 정자로 기재, 영문 : 여권의 영문명 기재, 성별 : 남,여, 체크 ) | |

**3. 고객확인 관련 추가 기재사항**

|  |  |  |
| --- | --- | --- |
| **구분** | | **내용기재** |
| **개인ㆍ법인사업자**  **(공통)** | **거래목적** | 급여 및 생활비 저축 및 투자 보험료납부 결제 공과금납부 결제  카드대금 결제 대출원리금 상환 결제 사업상거래 보장 상속  기타 : |
| **신원확인정보**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여권 + 외국인등록증  여권 + 제외구간 국내거소신고증 |
| **자금 원천 및 출처** | 근로 및 연금소득 퇴직소득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부동산 양도소득 금융소득(이자 및 배당) 상속/증여  일시 재산양도로 인한 소득 기타: |
| **개인사업자** | **국내 거주여부** | 거주 비거주(외국인 비거주자는 생년월일, 성별, 실제 거소, 연락처 확인 필수) |
| **법인사업자**  **(비영리법인/임의단체 포함)** | **법인확인정보** | 주주명부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 기타: |
| **법인확인정보**  **(비영리법인/임의단체)** | 회원명부 사원명부 구성원명부 출자자명부 이사회명부  기타: |
| **상장여부** | 상장 비상장 |

20     년     월     일

|  |  |
| --- | --- |
| **상호 :** |  |
| **대표 :** | **(인)** |
| **※ 개인/법인사업자 : 대표자/법인 인감 날인 필수** | |

**1. 고객사 기본정보 (필수)** (□ 부분은 업체 정보에 맞게 V체크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하시는 것은 계약서의 부속서류로 계약서와 동일한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 중요정보 및 공지사항은 이메일로 발송되오니 정확한 정보를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상호명(법인명)** |  | | | **사이트 URL**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대표자명** | |  | | |
| **사업장주소** |  | | | **대표전화** | |  | | |
| **주요판매품목** |  | | | **과세여부** | | 과세  비과세 (     ) | | |
| **운영담당자** | **성명** |  | **부서명** | |  | | **직책** |  |
| **전화번호** |  | **휴대폰번호** | |  | | **이메일** |  |
| **정산정보** | **은행명** |  | **계좌번호** | |  | | **예금주** |  |
| **세금계산서** | **수신 이메일** | | | | | | | |
| **가입경로** | 인터넷광고(검색) 인터넷카페광고 SNS (페이스북,블로그) 호스팅사광고 디자인업체추천 지인추천 영업담당자 기타 (기존가입자 등) | | | | | | | |

|  |
| --- |
| ※ 정산은행은 개인사업자는 대표자명, 법인사업자는 법인명의의 계좌만 이용 가능합니다.  ※ 정산계좌는 ‘대표자명’ 또는 ‘상호명’으로 개설된 계좌여야 하며 예금주는 은행에 등록된 예금주와 일치해야 합니다.  ※ 위 신고사항에 변동이 발생하였을 경우 당사(케이지모빌리언스)에 제신고하여야 하며, 최신성 유지를 위한 제신고 누락, 지연 등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 등에 대한 귀책사유는 귀사(고객사)에 있습니다. |

**2. 서비스 내용 및 수수료**

|  |  |  |  |
| --- | --- | --- | --- |
| **구 분** | **내 역** | **이용요금** | **비고** |
| **초기등록비** | 모든 결제수단 | 면제 | 초기 등록비 1회 결제 |
| **연관리비** | 엔에이치엔커머스 회원에 한해 면제 |
| **기술지원** | 장애 방지/대응 서비스  모듈 관리/업데이트 | - | 결제수단 수수료에 포함하여 책정 |
| **시스템 운영관리** | 시스템 유지보수  시스템 보안관리 | - |

|  |
| --- |
| ※ 입금된 등록비 및 운영비는 서비스계정이 부여 된 이후에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 사업자번호의 변경이나 개인사업자의 대표자 변경시 신규계약으로 진행되어, 등록금 및 운영비가 추가 발생됩니다.  ※ “고객사”는 매년 연회비를 재계약 전월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할 경우 “고객사”의 정산대금에서 차감될 수 있습니다. |

**3. 담보현황**

※ 보증보험 및 승인한도는 모빌리언스의 심사 기준에 의거하여 적용됩니다.

|  |  |  |  |
| --- | --- | --- | --- |
| **※ 심사자 기재란이오니 작성하지 마십시오. ※** | | | |
| **보증보험** | 년 만원 | | 1년 단위 갱신 계약 | |
| **승인한도** | 월 한도 | 월 만원 | 모빌리언스 심사 기준에 의거 적용 | |
| 1회 한도 | 1회 만원 |

|  |
| --- |
| ※ 보증보험은 1년 단위 갱신으로 계약이 기준이며, 보증보험 기간이 도래시 자동갱신이 되지 않습니다.  ※ 위의 보증보험이 갱신 되지 않을 경우 당사에서는 정산대금을 지급보류 할 수 있습니다. |

**4. 결제수단별 신청 및 수수료**

|  |  |  |  |  |  |
| --- | --- | --- | --- | --- | --- |
| **구 분** | **내 역** | **이용요금** | | | |
| **결제**  **수단**  **및**  **수수료** | 카드 | 일반구간 | | 판매대금의 3.40 %(VAT별도) | |
| 1구간 | | 판매대금의 1.90 %(VAT별도) | |
| 2구간 | | 판매대금의 2.50 %(VAT별도) | |
| 3구간 | | 판매대금의 2.65 %(VAT별도) | |
| 4구간 | | 판매대금의 2.90 %(VAT별도) | |
| **※ 정부 정책에 따라 사업자의 연매출 구간이 달라질 경우 1구간~일반구간에 해당되는 수수료가 적용되며,**  **해당구간은 관리자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 | |
| 계좌이체 | | | | 판매대금의 1.80 %(VAT별도)  최저수수료 200 원/건(VAT별도 |
| 가상계좌  (무통장입금) | 입금기한 | 채번일+ 5일  채번일+ 10일 | | 건당 300 원(VAT별도) |
| 휴대폰 | 컨텐츠  실 물 | | | 컨텐츠 9.00 %(VAT별도)  실 물 6.50 %(VAT별도) |

**4-1. 간편결제 서비스**

(VAT 별도)

|  |  |  |  |  |  |
| --- | --- | --- | --- | --- | --- |
| **간편결제사** | **수수료** | | | **정산주기** | **비고** |
| **카드** | **머니** | **인증수수료** |
| **토스** | % | **3.40**% | - | **신용카드 정산주기와 동일** |  |
| **삼성페이** | % |  | **0.30**% |
| **SSGPAY** | % |  | - |
| **애플페이** | % |  | **-** |

|  |
| --- |
| ※ 신용카드와 동일 수수료 및 정산주기 적용 (단, 원천사 자체 인증수수료가 있는 경우 달라질 수 있음)  ※ 본 계약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고객사의 필수 기본 정보는 간편결제 원천사에 제공될 수 있습니다.  ※ 본 계약이 종료되더라도 고객사가 간편결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본 계약 및 관련 정보는 간편결제 원천사에 자동으로 이전될 수 있습니다.  ※ 위 ‘애플페이’의 ‘인증수수료’는 추후 변동 될 수 있으며, 만약 ‘인증수수료’ 발생에 동의하지 않는 “고객사”는 “회사”에 직접 서면으로 계약해지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 결제수단 정산주기**

|  |  |  |  |
| --- | --- | --- | --- |
| **구 분** | **내 역** | **정산주기 선택** | |
| **정산**  **주기** | 신용카드(체크카드,간편결제 포함)  계좌이체  가상계좌(무통장입금) | 주1회 정산(월4회 정산) | 매입 마감일 : 수∼화요일 24시 |
| 15일 정산(월2회 정산) | 매입 마감일 : 1~15일, 16일~말일 |
| 월 정산(월1회 정산) | 매입 마감일 : 말일 24시 |
| 일 정산(D+7일 정산) | 마감일 : 승인당일 |
| 휴대폰 | 승인 월(N) + 3개월5일 (영업일 기준) 정산  (단, 이동통신사의 실제 입금 분에 대해서만 정산)  \* 휴대폰 선정산의 경우 별도 계약이 필요합니다. | |

**6. 기타 부가서비스**

(VAT 별도)

|  |  |  |  |  |
| --- | --- | --- | --- | --- |
| **서비스** | **신청** | **제공 서비스** | **기타사항** | **비용** |
| **현금영수증** | **신청**  **미신청** | 현금영수증 발급서비스  결제 모듈에 따라 자진발급 가능 |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신청  **Y(자진발급 신청 권장)**  **N**  **\* 올앳 결제 모듈에서만 자진발급 기능 사용 가능** | 무료 |
| **에스크로서비스** | **신청**  **미신청** | 계좌이체 가상계좌(무통장입금)  **※ 현금성 결제수단 의무적용** | 별도 에스크로서비스 특약서 작성 | 무료 |
| **정산대금 입금 알림서비스** | **신청**  **미신청** | 가맹점별 정산대금 입금당일  예정금액 사전 알림 서비스 기능 | 알림서비스 수신자(정산담당)  ㆍ이 름 :  ㆍ휴대폰번호 :       **\* 해당 휴대폰번호로 정산금액 발송됩니다.** | **※ 별도 부가비용**  **발생 할 수 있음** |

**7. 모빌리언스 안심 서비스 적용 안내**

|  |
| --- |
| KG모빌리언스 안심서비스란 고객이 쇼핑 시 발생하는 쇼핑몰(가맹점)과의 분쟁을 대행 해결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구매시 안전한 거래를 위한 보호장치이며 가맹점의 신규 고객 유치 상승 및 매출 상승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결제시 소비자의 동의를 받고 진행되며 KG모빌리언스가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따라서 가맹점에서는 별도의 작업은 없습니다.)  KG모빌리언스 서비스 신청시 자동으로 적용되오니 원치 않으실 경우 당사 고객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8. 특별 적용사항 (모빌리언스 기재 사항란)**

|  |
| --- |
|  |

**9. 서비스 상세설명**

|  |  |  |
| --- | --- | --- |
| 서비스명칭 | 서비스 세부 항목 | 서비스 설명 |
| 기본서비스 | 승인 대행 | 구매고객의 인증정보 및 결제정보를 이용하여 결제원천기관으로 승인 요청하는 서비스로, 주문정보와 정산/결제운영대행을 위한 기본거래데이터를 생성 및 저장합니다. |
| 매입 대행 | 가맹점을 대신해 카드사로부터 판매대금을 정산 받기 위해 청구하는 서비스로, 매입반송/매입결과/입금예정결과의 처리를 지원합니다. 본 서비스는 자동/수동매입방식으로 제공됩니다. |
| 정산 대행 | 가맹점을 대신해 카드사로부터 받은 판매대금(전자결제 대행수수료 제외)을 가맹점에 지급하는 서비스로, 승인거래 검증/관리, 대사서비스, 리포트 등을 포함합니다. |
| 필수서비스 | 결제 플랫폼 | 가맹점의 결제연동패키지와 온라인 통합 결제창을 포함하는 인터넷 결제승인 플랫폼으로 유효 가맹점 확인, 결제수단별 인증, 결제 원천기관과의 통신 등이 이루어집니다. |
| 인증 대행 | 결제환경(PC, 모바일 등) 및 결제수단별 인증방식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신용카드의 경우 ISP/안심클릭의 기본인증을 제공하며, 금액에 따라 공인인증/ARS인증 등 추가인증을 제공합니다. |
| 서비스 운영 | 안정적이고 편리한 서비스 제공과 서비스 품질 유지를 위해, 24시간 전산센터운영, 실시간 거래모니터링(SMS통보), 대외 보안감사 및 인증 획득, IDC 이중화 운영, 대외 결제 제휴사 운영 관리, 계약 및 보증보험 관리 등 결제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지원합니다. |
| 기술지원 | 전문 기술담당자가 가맹점의 결제 연동 시 기술 자문 및 결제 시 발생하는 기술적 오류/문의 답변에 대해 직접 응대하는 서비스로, 전화상담, 이메일, 1:1 문의를 통해 가능합니다. |
| 부정거래 솔루션 | FDS(이상 금융 거래 탐지 시스템)를 통해, 부정 거래 차단을 통한 결제 사고 방지 서비스입니다. |
| 매출전표발행 대행 | 결제 플랫폼을 통한 거래 발생 이후, 전자영수증(매출전표, 거래내역확인서, 현금성 지불수단의 경우 현금영수증을 포함) 형태로 구매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
| 고객지원 | 구매 고객의 민원 응대와 가맹점의 문의 상담 서비스로, 전화상담, 1:1 가맹점 문의 게시판,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등의 채널을 통해 제공됩니다. |

주식회사 케이지모빌리언스(이 하 "회사")는 (이하 “고객사”)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고객사” 의 개인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  |  |
| --- | --- |
|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 |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 | “회사”는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고객사”의 개인정보 항목을 수집∙이용하고 있습니다.  - 계약의 성립, 유지 및 종료를 위한 본인식별 및 실명확인  - 서비스 제공에 따른 요금 정산 및 입금 알림 서비스 제공과 월별 정산내역 안내  - 원활한 서비스 이용을 위한 결제기관 정보제공  - 서비스의 추가와 변경내역에 대한 공지, 고객민원 및 문의에 대한 대응  - 부정 이용방지 및 비인가 사용방지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본인확인 업무 |
|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담당자정보(이름, 이메일 주소, 휴대전화번호), 대금 입금계좌정보(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대표자정보(이름, 국적,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생년월일, 주민번호)  접속정보(로그인ID, 서비스 이용기록, 접속로그, 접속IP정보) |
| **개인정보의**  **보유·이용기간** |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 합니다. 단, 전자금융거래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당해 법령에서 정한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보존하는 정보를 그 보존의 목적으로만 이용합니다.   |  |  |  | | --- | --- | --- | | **내용** | **근거법령** | **보존기간** | |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5년** | |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 **5년** |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 | **표시•광고에 관한 기록** | **6개월** | | **신용정보 업무처리에 관한 기록**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3년** | |

**“고객사”는 “회사”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 서비스신청이 정상적으로 완료 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
| --- |
| **“고객사”는 개인정보 및 관련정보를 “회사”가 위와 같이 수집∙이용함에 관하여 고지를 받았으며,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대표자 :       (인)  **※ 개인/법인사업자: 대표자/법인 인감날인 필수** |

**2.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및 위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 회사는 “고객사”의 동의 없이 “고객사”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회사는 서비스 이행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  |  |  |  | | --- | --- | --- | --- | | **제공목적** | **제공받는 자** | **제공정보** | **보유 및 이용기간** | | **서비스**  **이용을 위한 결제기관**  **정보제공** | **1. 신용카드 : 비씨, KB국민, 삼성, 신한, 롯데, NH, 현대, 하나**  **2. 계좌이체 : 금융결제원, 토스페이먼츠 주식회사**  **3. 간편결제 : 주식회사 카카오페이, 삼성전자 주식회사, ㈜에스에스지닷컴, 엔에이치엔페이코㈜, 롯데멤버스(주), ㈜토스, 네이버파이낸셜 주식회사, 애플코리아(유)**  **4. 휴대폰 : SKT, KT, LGU+, SK7mobile, KCT, 헬로모바일** | **사업자번호, 상호명, 생년월일, 홈페이지주소,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소** | **서비스종료 시,**  **또는 상담 후**  **폐기** | | **5. 상품권 : ㈜한국문화진흥, ㈜티알엔, ㈜한국페이즈서비스, ㈜해피머니아이엔씨** | **사업자번호, 상호명,**  **홈페이지, 대표자명,**  **전화번호** | |
| **개인정보**  **처리위탁** | “회사”는 “고객사”의 동의 없이 ”고객사”의 개인정보를 외부 업체에 위탁하지 않습니다. “회사”는 서비스 이행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외부 업체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  |  | | --- | --- | | **위탁 목적** | **고객상담 업무지원 위탁 수행** | | **수탁자** | **㈜메타엠** | |
| **개인정보제공**  **예외사항** | 회사는 “고객사”의 개인정보를 원칙적으로 외부에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 “고객사”들이 사전에 동의한 경우  - 법령의 규정에 의거하거나, 수사 목적으로 법령에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수사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 도용방지를 위하여 본인확인에 필요한 경우 |

**“고객사”는 “회사”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 서비스신청이 정상적으로 완료 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
| --- |
| **“고객사”는 개인정보 및 관련정보를 “회사”가 위와 같이 수집∙이용함에 관하여 고지를 받았으며,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대표자 :       (인)  **※ 개인/법인사업자: 대표자/법인 인감날인 필수** |

**3.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고객확인의무) 및 시행령 제10조의5(실소유자 확인)에

따라 실소유자 정보 작성 및 자료 제출에 대한 본인확인 용도로만 활용됩니다.

|  |  |  |
| --- | --- | --- |
| **항목** | **목적** | **보유 및 이용기간** |
| **생년월일, 주민번호** | **실소유자 고객확인** | **금융거래관계 종료일로부터 5년** |

**“고객사”는 “회사”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 서비스신청이 정상적으로 완료 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
| --- |
| **“고객사”는 개인정보 및 관련정보를 “회사”가 위와 같이 수집∙이용함에 관하여 고지를 받았으며,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대표자 :       (인)  **※ 개인/법인사업자: 대표자/법인 인감날인 필수** |

**1. 목적**

주식회사 케이지모빌리언스는 고객님들에게 보다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를 상품소개 및 마케팅 등 영업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활용 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서비스 이용 제한은 없습니다.

**2. 수집 및 활용 관련 정보**

활용되는 개인정보 및 제공된 정보의 이용목적은 아래와 같으며, 회원님들 중 마케팅 활용에 동의하신 회원님들의 정보만이 활용됩니다.

|  |  |  |
| --- | --- | --- |
| **항목** | **목적** | **기간** |
|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 **경품제공 및 프로모션 진행, 이벤트 활용, 신규 서비스 마케팅** | **제공일로부터 2년** |

**3. 정보제공의 동의 철회**

본 동의서에 동의하고 회원가입을 완료하신 회원 중, 마케팅활용 동의를 철회 하고 싶은 회원은 언제든지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열람, 정정, 삭제 및 정보제공 동의 철회는 전화, 팩스, 이메일 등을 통하여 본인 확인 후 요청 할 수 있습니다

마케팅 동의 철회는 즉시 가능하나, 서비스에 반영되는 데는 일정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활용동의 철회를 요청하시더라도 위와 같은 이유로 고객님의 정보가 마케팅에 활용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 --- |
| 본인은 개인정보의 마케팅 활용에 관하여 고지를 받았으며,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대표자      (인)  **※ 개인/법인사업자 : 대표자/법인 인감 날인 필수** |

      **(이하 ”고객사”라 함)와 주식회사 케이지모빌리언스(이하 ”회사”라 함)은 “고객사”와 “회사”의 전자결제서비스를 이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제 1 조 (목 적)**

본 특약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2021.12.30) 및 '시행령'(2021.3.2)에 따라 온라인전자상거래 시 공신력 있는 제3자(에스크로사업자-“회사”)가 소비자의 결제대금을 예치하고 있다가 상품배송이 완료된 후 그 대금을 통신판매업자(“고객사”)에게 지급하도록 해 거래상의 안전을 담보하는 제도를 이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2 조 (에스크로서비스 용어)**

① 배송개시일 : “고객사”가 고객의 거래에 대한 배송정보를 기입하는 일자로 배송정보라 함은 구매 고객의 성명, 배송지 주소, 연락처, 이메일, 배송업체명, 배송장번호 등을 기입한 일자로 한다.

② 구매결정 : “고객사”를 통해 고객이 거래한 물품이 배송이 되어 구매여부를 결정한다.

③ 자동구매확정일자 : “고객사”가 배송정보를 등록한 배송개시일을 기준으로 5일 이후 자동구매확정일로 정한다.

④ 원 거래일 : “고객사”의 상품을 고객이 구매한 거래 일자를 말한다.

⑤ 정산주기 : “회사”와 “고객사”가 전자결제서비스 계약서에서 지정한 결제수단별로 지급되는 정산주기를 말한다.

**제 3 조 (에스크로서비스 대상거래)**

본 부속 특약서의 적용 대상 조건은 실물이 배송되는 서비스에 한하며, 배송되지 않는 컨텐츠 등의 무형의 서비스에는 적용 제외한다.

**제 4 조 (에스크로서비스 거래에 대한 “고객사”의 의무)**

1) “고객사”는 에스크로서비스 대상 거래에 대한 배송정보를 입력하여 “회사”에 배송개시일을 즉시 제공하여야 하며, 배송정보 미제공에 따른 불이익은 “고객사”가 책임진다.

2) “고객사”가 “회사”에 제공한 배송정보 중 이메일은 실질적인 대금지급에 대하여 확인되는 기초 자료로서 “고객사”의 쇼핑몰에서 거래한 ‘고객’에게 정확한 이메일 정보를 제공 받도록 노력한다.

3) 에스크로서비스의 배송업체는 운송장번호(배송현황에 대한 조회가능)를 제공하는 업체만 가능토록 진행한다. 이에 “고객사”는 **퀵서비스 등 배송추적이 불가능한**

**배송업체**를 통하여 배송 후 배송정보를 “회사”에 제공 시 추후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고객사”가 모든 책임을 진다.

4) “회사”는 “고객사”가 제공한 에스크로서비스 거래 건에 대한 배송정보를 신뢰하되, 이에 대한 부정확한 정보에 대하여 검색 및 정보의 사실성에 대한 책임은 모두 “고객사”가 지도록 한다.

5) “고객사”의 쇼핑몰에서 구매하는 ‘고객’ 중 에스크로 서비스 대상 거래 건에 대해서는 에스크로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약관동의를 받도록 한다.

(구매결정 확인메일을 ‘고객’이 “회사”에 통보하는 시스템 - 약관의 일부 내용)

**제 5 조 (에스크로서비스 거래에 대한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에스크로서비스 거래에 대하여 배송정보 수집부터 대금지불까지 원활한 서비스가 이루어 지도록 노력한다.

2) “회사”는 에스크로서비스 거래 건 중 정상적인 절차로 확인된 매출 대금에 대해서는 정산주기에 맞추어 “고객사”에게 지급한다.

**제 6 조 (에스크로서비스 거래 Flow)**

1) 서비스 Flow는 아래와 같이 진행된다.

① “고객사”는 ‘고객’이 주문한 물품을 배송한 당일(배송개시일) 에스크로사업자인 “회사”에 배송정보를 전송한다.

② “회사”는 “고객사”에게서 제공 받은 배송정보를 기준으로 하여 ‘고객’에게 구매결정 요청 메일을 발송한다.

③ ‘고객’은 주문한 물품을 수령한 후, 구매확인을 한다. (단, 물품의 하자나 기타 사유로 반품 요청 시 구매거절를 할 수 있다.)

④ “회사”는 고객의 구매확인을 확인한 후, “고객사”에게 정산주기에 맞추어 대금을 지급한다. (제7조의 에스크로서비스 거래에 대한 정산 조항을 기초로 지급한다.)

⑤ “회사”는 대금을 지급 완료 시, 고객에게 에스크로 지급완료 안내 메일을 발송한다. (고객의 자동구매확정일자 이후 자동으로 에스크로 완료된 거래에 대해서도 대금 지급 완료 시 메일을 발송한다.)

**제 7 조 (에스크로서비스 거래에 대한 정산)**

1) 모든 에스크로 거래건의 경우 배송개시일(배송장 번호등록)이 등록되어야 정산대상이 되며, 배송개시일이 정산 기준일이 된다.

2) “회사”는 “고객사”에게 제6조의 에스크로서비스 거래 Flow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대금을 지급한다.

가. 계좌이체, 가상계좌(무통장) 정산

① 자동구매확정일자 내 고객이 구매결정을 할 경우, 고객이 구매결정을 접수하는 일자 기준으로 “회사”는 “고객사”에 정산주기에 맞춰 대금을 지급한다.

② 배송개시일 기준으로 구매결정 기간이 지나 자동구매확정일이 되면 “회사”는 “고객사”에 아래와 같이 정산한다. (정산일이 법정공휴일인 경우 다음날 지급한다.)

②-1) 원 거래일 기준으로 계산된 정산주기의 정산일이 자동구매확정일 보다 이후이면 해당 정산주기로 정산된다.

②-2) 원 거래일 기준으로 계산된 정산주기의 정산일이 자동구매확정일 보다 이전이면 자동구매확정일의 2일 이후에 대금을 지급한다.

③ “고객사”가 배송개시일(배송정보)을 자동구매확정일자 이후에 등록 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②항과 동일하게 대금을 지급한다.

④ 단, “고객사”와 “회사”가 합의한 경우 예외적으로 구매확정일 기준으로만 정산주기를 계산하여 정산일에 맞춰 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

나. 신용카드 정산

① 신용카드 에스크로 거래건은 배송개시일이 신용카드 매입일이 되며, 배송개시일을 기준으로 5일 이내 ‘고객’의 구매확인이 확인이 되었을 경우 매입일을 기준으로 신용카드 정산주기에 따라 정산한다.

② 신용카드 에스크로 거래건은 배송개시일이 신용카드 매입일이 되며, ‘고객’이 배송개시일 기준으로 5일 이내 구매확인을 체크하지 않았을 경우 매입일을 기준으로 신용카드 정산주기에 따라 정산한다. (단, 정산주기에 벗어난 고객 구매확인 체크건은 가까운 정산일에 지급한다.)

3) 에스크로 거래의 정산은 전자결제서비스 계약보다 본 특약서를 우선적으로 준한다.

4) “회사”가 “고객사”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보류하는 경우

① 상기 제 6조 1)항의 ①호에 의거하여 “고객사”가 “회사”에 배송정보를 제공하였으나, ‘고객’의 구매거절로 회신이 되었을 경우에 “회사”는 “고객사”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보류한다. 이 경우 “고객사”는 ‘고객’과 협의한 후 아래 두 가지 경우로 회신하여 대금지급 및 환불 받을 수 있다.

①-1) ‘고객’이 직접 구매확인을 체크 한 경우 “회사”는 이를 확인하고 ‘고객’ 확인 일을 기준으로 상기 에스크로서비스 정산기준에 의거 “고객사”에게 대금을 지급한다.

①-2) 환불처리(만일 물품의 반품으로 ‘고객’에게 대금을 환불을 해야 할 경우)

①-2-1) 계좌이체 당사의 계좌이체 기준에 의거하여 환불 처리된다.

(“회사”는 “고객사”의 물품반품 확인이 되는 시점에서 ‘고객’의 환불처리를 진행하도록 하며, 최초 발생한 승인수수료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①-2-2) 가상계좌의 경우 환불은 “고객사”가 하며, “회사”는 정산주기에 따라 대금을 지급한다. 이때 “고객사”는 “회사”에 환불한 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①-2-3) 신용카드의 취소처리 기준에 의거하여 매출취소를 하여야 한다. 이때, ‘고객’에게 신용카드 매출취소를 하지 않고 현금으로 환불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객사”와 “회사”의 전자결제서비스 계약서의 신용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 정산 기준에 의거 처리)

5) 사고발생에 대한 처리

① 처리기준은 “고객사”와 “회사”의 전자결제서비스 계약서의 조항을 우선하여 적용/처리한다.

**제 8 조 (본 특약서의 효력발생)**

본 특약은 “고객사”와 “회사”가 각각 서명, 날인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본 약정을 증명하기 위하여 “고객사”와 “회사”는 이 특약서 2부를 작성하여 상호 서명날인하고 각 1부씩 보관한다.

|  |  |  |
| --- | --- | --- |
| **구 분** | **수수료** | **서비스 이용수단 (계좌이체, 가상계좌 모두 체크)** |
| **에스크로서비스** | 판매대금의 0 % | **계좌이체  가상계좌(무통장입금)**  **(※ 신용카드는 에스크로서비스 의무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

|  |  |
| --- | --- |
| **에스크로서비스에 따른 정보 활용 동의**  본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객사”로 부터 취득한 배송정보 및 기타 정보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하여 에스크로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관련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는데 동의 합니다. | 동의함 |

20     년     월     일

|  |  |
| --- | --- |
| **(“고객사” : 이용자)** | **(“회사” : 제공자)** |
| ※사업자등록증의 정보로 기재 | 주식회사 케이지모빌리언스 |
| 상 호 명 : |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
| 주 소 : | 케이지타워 16층 (순화동) |
| 대표(이사) :       (인) | 대표이사 유 승 용 (인) |
| **※ 개인/법인 사업자 : 대표자/법인 인감날인 필수** |  |

**국내 최고의 통합 결제 서비스 모빌페이 전자결제서비스를 이용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서비스 가입에 필요한 서류를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계약서 발송 전 꼭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및 사이트 관련 내용이 미비할 경우 서비스 가입에 따른 오픈, 카드사 심사, 정산지급이 지연됩니다)**

**- 주의사항: 계약서에 날인된 도장과 법인 인감증명서의 도장이 반드시 일치해야 합니다**

**- 선택제출 서류: 모빌페이 사이트 > 고객센터 > 자료실**

|  |  |  |  |
| --- | --- | --- | --- |
| **제출서류 관련사항** | | | **셀프 체크** |
| 필수 제출 | 공통 | **● 계약서 2부 (대표자 인감 날인 필수)** |  |
|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
| 개인사업자 | **● 대표자 명의 통장사본 1부** |  |
| **● 대표자 인감증명서 원본 1부 (유효기간 : 발행일로부터 3개월)** |  |
| **● 대표자 신분증 사본 1부 (앞∙뒷면)** |  |
| 법인사업자 | ● **법인명의 통장 사본 1부** |  |
| ● 법인 인감증명서 원본 1부 **(유효기간 : 발행일로부터 3개월)** |  |
| ● 등기사항전부증명서(현재사항) 1부 **(유효기간 : 발행일로부터 3개월)** |  |
| ● 주주명부 **(유효기간 : 발행일로부터 3개월)**  **※ 주주명부 제출 제외대상: 국가기관 및 상장법인 / 비영리법인: 명부+정관 제출 필수** |  |
| 선택 제출 | | 사용인감으로 날인 시. **사용인감계 1부** 제출 (모빌리언스 자료실에서 확인요망) |  |
| 양도양수일 경우, **양도양수특약서 2부** 제출 (모빌리언스 자료실에서 확인요망) |  |
| 계좌이체, 무통장(가상계좌)서비스 사용 시, **[MOBILPAY 에스크로서비스 특약서] 2부** 제출  ※ 현금성거래(계좌이체, 무통장입금)는 에스크로 의무 적용대상임. |  |
| **사이트 관련 사항 (카드사 심사 시, 반송사유 이므로 꼭 확인 해주시기 바랍니다.)** | | | **셀프 체크** |
| ■ 온라인신청이 되어 있습니까? | | |  |
| ■ 사이트하단의 필수 사업장정보가 모두 기재 되어 있습니까?  (상호,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유선전화번호(인터넷전화포함)) | | |  |
| ■ 카테고리별 상품 등록, 배송 및 교환/반품에 관한 정보가 있습니까?  ※ 상품 등록: 카테고리 하위에 상품 등록, 상품 상세 정보 등록 여부 | | |  |
| ■ 비회원구매가 불가능할 경우 아래의 항목에 기재 해주시기 바랍니다.  (카드사 심사를 위한 테스트용ID :  패스워드:  ) | | |  |
| ■ 신용카드 결제창이 연동 되어 있습니까? | | |  |

**□ 보내실 곳**

(일반우편으로 발송하면 분실될 우려가 있습니다. 배송추적이 가능한 **등기우편으로 발송해주세요**.)

절취선 **✄**

|  |
| --- |
| 받는 사람  우편번호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6층 (순화동) ㈜케이지모빌리언스  MOBILPAY 전자결제서비스 계약담당자 |